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대상 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마을을 말함(안 제2조)
- 나. 재정지원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정함(안 제3조)
- 다.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농어촌버스의 외부 회계감사를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함(안 제4조)
- 라.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방법, 운행계통, 운행시간 등은 기점(종점)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인구수,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함(안 제6조)
- 마. 재정지원의 신청 및 결정(안 제8조 및 제10조)
- 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심의단의 구성 및 운영,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위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10인 이하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심의단을 구성(안 제9조)

###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15년 예산 1,764,331천원 반영  
(본예산 1,418,975천원, 추경예산 345,356천원)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라. 기 타

1) 입법 예고(2015. 7. 6. ~ 2015. 7.27.)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관련규정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란 농촌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대상 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마을을 말한다.
8.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인·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하는 해당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별표 1”의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4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2년에 한번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제4조에 따른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별표 2”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6조(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방법 등)** 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영은 법 제4조제3항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한정면허를 받은 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부터 법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 등은 기점(종점)부터 마을까지의 거리 및 인구수, 이용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200원으로 한다.

**제7조(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영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차량 구입비 및 차량 부가장비 설치비용
2.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기사인건비, 유류비, 차량 소모품 교환비, 차량보험료 등과 같은 운영비용

**제8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심의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건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10명 이하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심의단(이하 “심의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2. 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3. 교통 및 재정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여성·시민 사회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5. 마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② 심의단은 보조금 지원 및 방법 등 재정지원 전반에 대해 심의한다.

③ 심의단은 운수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 및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단은 업무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경우 제9조의 심의단의 심의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제2호 중 “임실군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을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으로 한다.
- ② 제3조제1항 중 “정기적”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한다.
- ③ 제5조제1항 중 “버스 운행 대표자는”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으로 한다.
- ④ 제7조 중 “버스 대표자는”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으로 한다.
- ⑤ 제8조제2항 중 “버스 대표자가”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로 한다.

**【별표 1】**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3조제2호 관련)**

재정지원 대상사업명

1.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택시 미터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시스템, 버스 및 택시 휴게시설, 승강장, 운행노선 표시장치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액 보전
3. 학생, 청소년 등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우대승차권 및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손실보전금
5.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6.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영 재정지원
7.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사업
8.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 교통체계개선에 따른 결손액
9.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
10.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
11. 모범운전자 제복비 지원
12.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1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14.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별표 2】**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산정기준(제5조 관련)**

운송원가 및 운송수익금 산정기준

1. 운송원가는 다음 항목은 포함하여 산정한다.
  - 가. 인건비
  - 나. 연료비
  - 다. 차량정비비·관리비
  - 라. 복리후생비
  -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차량연수)
  - 바. 차량보험료
  - 사. 사고보상비
  - 아. 매표수수료
  - 자. 그 밖의 비용
2. 제1호 “마” 목의 차량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금은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4.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가.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 나.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라.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 비용발생요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 ○ 관련조문

-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재정지원 대상) 및 제7조(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운영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육성 및 재정지원을 위한 비용 반영

- 수용응답형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비용 반영

#### 나. 추계 결과 : 2015년 1,764백만원, 2016년 1,873백만원

####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2015년 : 1,764백만원

-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 308백만원
- 도 및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 1,345백만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 108백만원
- 모범운전자 제복지원사업 : 3백만원

### 3.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군비)

### 4. 작 성 자 : 지역경제과장 한성철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47,213	250,000	150,000	150,000	150,000	847,213	
국비		100,000				100,000	
도비	147,21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7,213	
세 출	1,764,331	1,837,058	1,771,058	1,771,058	1,771,058	8,914,563	
국비		100,000				100,000	
도비	147,213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47,213	
군비	1,617,118	1,587,058	1,621,058	1,621,058	1,621,058	8,067,350	
재원 조달	1,764,331	1,837,058	1,771,058	1,771,058	1,771,058	8,914,563	
의존 재원	소 계	147,213	250,000	150,000	150,000	150,000	847,213
	보조금	147,213	250,000	150,000	150,000	150,000	847,21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17,118	1,587,058	1,621,058	1,621,058	1,621,058	8,067,350
	지방세	1,617,118	1,587,058	1,621,058	1,621,058	1,621,058	8,067,3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